

【 10 】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건의안 채택의 건

발의년월일 : 2000. 7. 5

발 의 자 : 김영안의원외 2인

□ 제안이유

○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전에 결정하여 배정한 공장건축 허가물량 범위내에서 신·증설, 용도변경을 허가도록 한 수도권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결림돌이 될 뿐 아니라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중복규제 공장건축총량 수요예측이 경기변동 현실과 지나친 괴리가 발생하여 공장건축 총량제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및 금년도 물량 추가배정

建 議 文

평소 국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대통령(국무총리,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대통령(국무총리, 장관)님께서는 IMF등 어려웠던 국가경제를 탁월한 경륜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면서 온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줘 제2의 경제 도약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한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시어 7,000만 거레의 소원인 통일의 밑바탕을 다져 놓으신 노고에 대하여 11만 양주 군민모두는 진심으로 경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양주군 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대통령(국무총리, 장관)님께서 다져 놓으신 국가 정책을 토대로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은 수도권 과밀억제 방안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공장건축 총량』의 소진으로 인하여 개발을 할수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 건축 총량제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자연만 시키는 제도로 수도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IMF를 극복한 기업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1. 21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과 상호 모순배치되는 사항으로 공장건축 입지 물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된 불합리한 규제라 사료됩니다.

우리 양주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규제의 중첩(개발 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등)으로 기업 활동은 물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 발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 주민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으로 다소나마 위안을 받고 있었으나 금번 공장 건축 총량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민원이 가일층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총량 규제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계약하고도 건축행위를 하지 못해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수출 · 입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부도 위기를 맞는등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건축물량과 금년도 추가 소요예정 물량에 대하여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공장건축 총량을 조속히 추가 배정해 주시길 바라며

나아가서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장 건축 총량제는 시장경제 원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기에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가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대통령(국무총리, 장관)님의 건강과 축복이 항상 곁에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 7월 6일

경기도 양주군 의회 김광배 의장외 의원 일동